■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 9.>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목재생산업의 종류		
	취급 목재 또는 목재제품		연간 생산량·수입량
	자본금	백만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